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1)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공유재산 현황 및 (면제) 사용료 산출

재산종류	건물명(소재지)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면적
행정재산	(구)금곡동주민자치센터 [석실로 724 (금곡동)]	남양주문화재단	문화재단 사무실	375㎡ (4층)

○ (면제) 사용료 산출

- 재산평가액(608,582,960원) × 사용료 요율(5%) = 30,429,140원 / 연간

3)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 2. 25. : 2025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구)금곡주민자치센터 내 사무실 사용 → 원안가결
- 2025. 5. :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출
- 2025. 6. : 남양주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관리관 : 문화예술과장)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구)금곡동주민자치센터를 남양주문화재단 사무실로 사용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기반 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남양주문화재단은 남양주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상 면제 요건이 충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 ⑦ (생략)